

「K-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대표 미식자원인 교촌치킨 1호점과 지역 관광·먹거리 자원을 연계한 「K-치킨벨트 조성 사업」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관광상품 개발·운영 및 홍보·모객의 효율성을 높이고,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K-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(1) 추진근거

- 「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4조, 제25조
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16조

(2) 추진 필요성

- 관광상품 기획·운영·홍보·모객 등 복합적인 관광서비스 제공에 전문성과 현장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 여행업체를 통한 민간위탁 필요
- 관광 분야 수행실적과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보유한 전문업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의 지속 가능한 운영 도모

다. 위탁사무 개요

- (1) 사업명: K-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
- (2) 공모주관: 농림축산식품부/한식진흥원
- (3) 신청자격: 여행업을 등록한 운영조직 구성 필수
- (4) 운영조직: (주)노랑풍선
- (5) 사업내용

- K-치킨벨트 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
- 관광상품 홍보·모객 및 예약·판매 운영
- 관광객 안내 및 안전관리, 만족도 조사 등 현장 운영 전반
- 기타 관광상품 운영과 관련하여 구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위탁기간: 위·수탁 체결일 ~ 2026. 12. 31.

마. 소요예산: 200백만원(국 100, 도 30, 시 70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수의협약

사. 적정성 검토 결과: 적정 ※2026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4조, 제25조

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16조

나. 예산조치: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K-치킨벨트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관광상품 기획과 홍보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사업 효과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관내 지역특화 업소가 소외되지 않도록, 지역특화 업소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하는 등 사업 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단년도 사업인 만큼 외부 관광객 유치가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구미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코스를 개발하고, 주요 관광객층을 명확히 설정하여 연령·국적·여행 목적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관광 코스와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